

구 한반도출신 노동자에 관한 사실이란?

첫 번째 사실

1965년의 ‘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’은 **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**하고 있습니다.

두 번째 사실

동 협정은 또,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**모든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**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,

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,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서 **70여 년 전에 일했던** 구 한반도출신 노동자의 청구를 인정해, 복수의 일본기업에 대해 **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.**

➡ 이들 판결은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. 일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**중대한 도전**이기도 합니다.



일한청구권협정(1965년)

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
(1951년)

일본국과의 평화조약(1951년) [=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]

제 4조 (a)

…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…및 …청구권(채권을 포함) …의 처분은 일본국과 그 당국 간의 **별도 협정의 주제**로 삼는다.

‘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’(1965년)

제 2조

-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(법인을 포함함)의 재산,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**청구권에 관한 문제가**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(a)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**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.**
(중략)
- 3 …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,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**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**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**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.**